

① 軍事裁判 單審判

○ 現行: §111 ④

④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·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, 哨兵·哨所·有害飲食物供給·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.

○ 民主黨: §109 ④

有害飲食物供給은 除外

○ 民主黨: 削除

- 非常戒嚴下에서 軍人·軍務員과 民間人중 軍事에 관한 間諜罪·哨兵·哨所·捕虜에 관한 罪를 범한 者의 限하여서는 軍事作戰을 위하여 軍事裁判을 單審制로 할 필요성이 絶對함.
- 이원정은 單審制의 要件은 平時時 一般國民의 限하여 需用될 素地가 전혀 없이 明白한 것이므로 國民의 基本權 保障과 관련되는 것은 아님.